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8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 김성원 · 권성동 · 김선교

고동진 • 이종배 • 정동만

박충권 • 박성훈 • 김소희

김위상 · 임이자 · 김정재

인요한 • 박준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는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, 4차 산업혁명 확산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,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.

이에 매년 11월 1일을 '전기인의 날'로 지정하여 100만 전기인의 자 긍심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956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 제목 "(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)"을 "(전기의 날 및 전기인의 날 제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날의"를 "날 및 전기인의 날의"로 하며, 같은 조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"을 "제3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②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9956호	법률 제19956호		
전기산업발전기본법	전기산업발전기본법		
제5조(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)	제5조(전기의 날 및 전기인의 날		
① (생 략)	<u>제정)</u> ①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②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		
	전기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		
	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		
	전기인의 날로 정한다.		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	<u>③</u>		
기의 <u>날의</u> 취지에 적합한 기념	<u>날 및 전기인의 날의</u>		
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			
	<u>.</u>		
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	<u>④</u> 제3항에 따른		
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			
령령으로 정한다.			